

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적용작업장 (업소·농장) 지정(연장) 신청서				처리기간	
				60일	
신청인	① 영업허가(신고·등록)번호		② 영업허가(신고수리·등록)년월일		
	③ 작업장(업소·농장)명		④ 전화번호		
	⑤소재지	본사			
		공장(농장)			
	⑥ 대표자성명		⑦ 주민(법인)등록번호		
	⑧ 관리책임자		⑨ 주민등록번호		
	⑩ HACCP 적용업종 또는 품목				
<p>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<input type="checkbox"/>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<input type="checkbox"/> 제7조의2제1항에 <input type="checkbox"/> 제9조의3제2항 <input type="checkbox"/> 제7조의8</p> <p>따라 HACCP적용작업장(업소·농장)으로 지정(연장)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귀하</p>					
<p><구비서류></p> <p>1. 지정신청의 경우</p> <p>가. 영업허가(신고)증 사본(농업인의 경우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</p> <p>나. 영업자와 종업원 또는 농업인의 교육훈련수료증 사본</p> <p>다. 최근 3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. 다만, 3개월 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1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.</p> <p>라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</p> <p>마.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</p> <p>2. 지정연장신청의 경우</p> <p>가. 영업허가(신고)증 사본(농업인의 경우 축산업등록증 사본,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</p> <p>나. 지정서 사본</p>					
				<p>수수료</p> <p>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</p>	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신청인	처리기관
	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
<div data-bbox="245 631 662 801">신청서</div>	<div data-bbox="874 631 1361 801">접 수</div> <div data-bbox="874 954 1361 1124">서류검토 및 현장조사</div> <div data-bbox="874 1270 1361 1429">평가·판정</div>
<div data-bbox="245 1592 662 1756">지정서 발급</div>	<div data-bbox="874 1592 1361 1756">지정서 작성</div>

